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8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육아 휴직수당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포함(이용우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5.
-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음.

이 중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른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

는 사각지대가 있으나, 당시에 미처 해소되지 못하였음.

이에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마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육아 휴직수당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포함(이용우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신 설>	☐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u>안 제3호</u> <u>마목 신설</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 받는 육아휴직수당 ○ 시행일: <u>2026. 1. 1.</u> ○ 적용례: <u>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u>

*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2),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이 각 학교경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르면,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②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③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음.

먼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²⁾,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³⁾,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 및 제24조⁴⁾에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4)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휴직) ① (생략)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② (생략)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⁵⁾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과거에는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괄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되게 됨⁶⁾.

□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립학교교직

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5)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원 연금법」 제60조의4의 특례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이하 “특례적용 교직원”이라 함)7).

-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적용기관 현황]

구분	적용기관	육아 휴직자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제1항)	한국 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	103명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제2항)	서울자동차 고등학교 등 43개 기관	1명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제3항)	사학연금공단	9명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제5항)	인천대학교 등 6개 기관	76명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제6항)	서울대병원 등 3개 기관	790명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제7항)	부산대병원 등 16개 기관	1910명
(합계)		2,889명

자료: 기획재정부(2025.4.기준)

특례적용 교직원들은 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고, ② 「고용보험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⁸⁾,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수령 대상도 아니며, ③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어, 법령상 육아휴직수당의 근거가 없음.

따라서 특례적용 교직원들은 각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하

8)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육아휴직수당은 ①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본문의 적용을 받지 못함. 또한, 이들은 ②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결국 특례적용교직원들이 각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세되고 있음.

[「소득세법」상 육아휴직수당(급여) 비과세 구조]

대 상 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 내용		관련 법령	현행 지급근거	비과세 여부
일 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규정」 등	「공무원수당규정」 등	○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법상 교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u>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u>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대상자	현행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u>정관 등에 따라</u>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의 취지와 다른 근로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소

득에 포함하여 법률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법령이 아닌 각 기관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세의 비과세 요건을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른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70억원(연평균 34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34	△34	△34	△34	△34	△170	△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